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람	기관의장

제 725호 2009. 11. 3. (화)

차 례

규 칙

○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33호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----- 2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1227호 신조 공인 공고 ---------- 4

○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-12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 6

회람	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

2009년 11월 3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33호

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”로 하고, “각호의 1로”를 “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"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하고, 제10조를 제9조로,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- 1227호

신조 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. 11. 02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인신조 사유

 - 조직개편(과신설)

2. 공인의 사용 예정일 : 2009년 11월 02일

3. 신조공인 인영

"별첨 참조"

신조공인 인영

신조 공인명	규격(cm)	신조 공인인명	비 고
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보건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	1.8㎝x1.8㎝		과신설
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보건행정과 분임물품출납원인	1.8㎝x1.8㎝		과신설
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보건행정과 분임경리관인	2.0㎝x2.0㎝		과신설
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보건행정과 분임징수관인	2.0㎝x2.0㎝		과신설
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보건행정과 물품운용관인	2.0㎝x2.0㎝		과신설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 - 1235호

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11월 3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「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」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와 주민에게 제한이 있는 조례 · 규칙(경쟁 제한적 조례·규칙)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선함으로써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」 제6조(기납수수료의 불반환)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

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○ 「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」 별표1 <증명>의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(1)납세증명 및 미(비)과세증명 개설신고사항 란을 “삭제”하고,

(1)호를 삭제함에 따라 구분 란의 (2)세목별과세증명을 (1)세목별과세증명으로, (3)징수유예증명을 (2)징수유예증명으로 한다.

3. 의견제출

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.11.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낼 곳(서구청 세무과)

-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서구청 세무과(전화:032-560-4191, 팩스:032-560-4199)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(안)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(www.seo.incheon.kr/고시·공고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(기납 수수료의 불반환)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”를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별표1 <증명>의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(1)납세증명 및 미(비)과세증명 개설신고사항 란을 “삭제”하고,

(1)호를 삭제함에 따라 구분 란의 (2)세목별과세증명을 (1)세목별과세증명으로, (3)징수유예증명을 (2)징수유예증명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 (본문)

구 분	현 행	개 정
기납 수수료의 불반환	제6조(기납 수수료의 불반환)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	제6조(기납 수수료의 불반환)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 반환 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(별표)

현 행

【별표1】 제 증 명 등 수수료

구 분	기준	요액
<증명> 3. 지방세에 관한 증명 <삭 제> <개 정> <개 정>		

개 정 안

【별표1】 제 증 명 등 수수료

구 분	기준	요액
<증명> 3. 지방세에 관한 증명 (1) 납세완납증명 및 미(비)과세증명 (1) 세목별과세증명 (2) 징수유예증명	 1건 1통	 삭 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